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17
----------	-----

제출연월일 : 2022. 4. 13.

제출자 : 남양주시장

1. 제안 이유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행안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2441(2021. 9. 17)호]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적극행정 업무 체계 정립

2. 주요 내용

- 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별지 제1~7호)
 - 안건의 제출 및 사전검토,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나. 적극행정 교육 및 적극행정 우수 부서·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7조,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나. 입법예고
 - 1) 예고기간: 2022. 3. 3. ~ 2022. 3. 23.(20일간)
 - 2) 예고결과: 의견있음 / 의견제출 1건
- 다. 부서협의
 - 1) 협의기간: 2022. 2. 25. ~ 2022. 2. 28.(4일간)

2)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여성아동과):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원안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법무담당관): 규제심사 대상 아님

라.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마. 도 관련부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남양주시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이 자문한 사항
4.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관을 포함해야 한다.

1.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2.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영 제17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 새로운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기존 위원이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9조(위원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자이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별지 제7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 대장 작성·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안건의 제출) ① 영 제12조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의 사전 검토)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을 제출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 결과서에 따라 작성·관리한다.

제14조(심의결과의 통지 등)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공개) 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8조(포상 등) 시장은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법무담당관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법무담당관 양 기 영
	팀장 직위·성명	적극행정팀장 이 성 주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현 철 (031-590-7320)

■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별지 제3호서식】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제11조제3항 관련)

사전컨설팅 안건명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기한	(접수일: 0000.00.00) (처리기한: 0000.00.00)	자문 회신 희망일	(0000.00.00이내)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input type="checkbox"/> 의견있음 <input type="checkbox"/> 의견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요청 배경	
자문 요청사항	
쟁점사항	
요청인의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첨부서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감사관**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 적극행정위원회 귀중

안건 심의서(제13조제1항 관련)

1. 심의·의결 안건

안건번호	안건명

2. 심의사항

핵심심의내용	심의의견	
	가(可)	부(否)
※ 심의·의결내용 홈페이지 공개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 심의의견은 안건 내용을 참고하여 可, 否 란에 “○”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의의견(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

0000. 00. 00 .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별지 제5호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제13조제2항 관련)

안건번호		심의일자	
안건명			

위 안건에 대하여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

년 월 일

남양주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별지 제6호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제14조제2항 관련)

(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하는 경우)

안건번호		심의일자	
요청인	소속 기관 및 부서	직급 및 성명(연락처)	
감사원 감사사항명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위 요청인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에 대한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 1)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2)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4. 종합 의견

년 월 일

남양주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별지 제7호서식】

회의 목록 내장(제10조제2항제3호 관련)

회차	접수일	신청 부서 (공무원)	개최일	방식	안건 유형	안건명	심의결과	심의 주요내용	공개여부
00	00-00-00	0000과	00-00-00	대면 서면	제3호 면책건의		수용 불수용		공개 비공개

작성 방법

- 안건유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 제4호 중 해당 각 호 기재 또는 같은 규정 제12조 의견제시 요청 기재
- 방식 : 회의방식 서면, 대면, 온라인 등 기재
- 심의결과 : 수용, 불수용, 반려, 취하 등 기재
- 심의 주요내용 : 심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기재
- 공개여부 : 심의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등) 기재

◆ 의견서 검토 결과

연 번	의견 제출인	의견내용	검토의견	반영 여부
	총 1건		[반영 1]	
1	서우택 (하수처리과)	○ 간사규정 수정 (제10조 제1항) 남양주시 조직구성에 적합한 간사규정 필요	○ 간사의 역할이 위원 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 리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제반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 로 간사역할은 적극 행정업무 담당이 되 는 것이 바람직함.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제16조(수당 등) 및 제18조(포상 등) 예산 관련 조항이 포함 되었으나 예산에 기반영된 사항으로 추가 예산의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법무담당관 양 기 영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남 양 주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2A경기남양021)

1. 법무담당관-2671(2022.02.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2A경기남양021) 1부. 끝.

남 양 주



주무관 권필순 팀장 배진휘 복지국장 전필 2022. 2. 28.
이인애

참조자

시행 여철아동과-5767 (2022. 2. 28.) 접수 법무담당관-2718 (2022. 2. 28.)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공로16번길 95, (다산2동, 남양주시청 복지국)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491 팩스번호 031-590-2269 / kwonps@korea.kr / 비공개(6)

- 청약용의 도시 남양주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남양021			
정책명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법무담당관		
	담당자명	최현철	전화번호	031-590-732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2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법무담당관)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관련 조항, 표현 : 없음 ✓성별특성 반영 : 해당사항 없음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성별 통계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남양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필순/031-590-4491) 법무담당관장 귀하				

붙임4 부패영향평가 결과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남 양 주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2-20)

법무담당관-2672(2022.2.25.)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가 결과 : 원안동의

*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남양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10조(재평가 절차)에 따라 3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11조(평가결과와 반영)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감 사

주무관 이인섭 청원유리팀장 심현아 감사관 전일 2022. 2. 28. 홍준기

발조자

서형 감사관-2296 (2022. 2. 28.) 접수: 법무담당관-2750 (2022. 2. 28.)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감사관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zmxncbv3@korea.kr / 비공개(5)

- 정약홍의 도시 남양주 !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2-남양주-20		
자 치 법 규 명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평 가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인섭
입 안 부 서	법무담당관	입 안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9급 최현철
평 가 결 과 통 지 과 일	2022. 2. 28.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p>2022년 2월 28일</p> <p>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p> <p>(담당자 / 연락처 : 이인섭 / 031-590-4719)</p>			
<p>법무담당관 귀하</p>			